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제정이유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인증취득 권장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인증취득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바. 인증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02-3396-8157 FAX: 02)3396-9055

- E-mail : queen@jungq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 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 2.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민간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 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 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

신청자	시설(업체)명						법인등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성 명		부 서		직	위	
	담 당	자	Tel		Fax		E-m	rail	
٥J	<u>l</u> 증 대싱	ļ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ı	m²	인증수	수료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